경영유의 등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인천)인천저축은행

2. 조치요구일 : 2023. 3. 8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2건, 개선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저축은행 사옥 관리 미흡

1995.2월 新사옥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도 舊사옥을 보유하면서 그 중 일부 공간(舊사옥 건물 연면적의 10.58%)[1]을 문서보관소·연수실·휴게실로 일정 기간 사용하였으나, 검사착수일(2022.5.11.) 현재 이를 해당 용도 등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[2],

1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제35조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영업소 등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

2) 검사착수일 현재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공실 상태이며, 동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해당될 소지

조속한 시일 내에 舊사옥을 처분하거나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

(2) 현지조치사항의 이행상황 관리 강화

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

자체감사조직의 장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현지조치사항의 이행상황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,

인천저축은행은 종전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받은 현지조치사항[1]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전말 확인,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, 시정조치 내역 기록·유지 등 이행상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[2],

1) 2013년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받은 현지조치사항은 총 12건(현지주의 10건, 현지개선 2건)

2) (예) 2012.7.3.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 1건에 대하여 표준규정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.10.16. 현지주의 통보를 받았음에도, 동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보유(2016.11.21. 매각)하는 등 이행실적 미흡

앞으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받은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대표이사 주관으로 여타 지적사항 정리 절차·방법에 준하여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점검 및 시정하고, 그 시정조치 내역을 기록·유지하며,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사후관리상 미비점 개선 등 현지조치사항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

나. 개선사항

(1)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업무체계 불합리

검사대상기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, 수신업무 담당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규정·매뉴얼 등 숙지 부족은 물론이고, 조직 내 불분명한 업무분장*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책임성 및 일관성 결여, 해당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 절차 미비**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하여 거래정보등 제공사실 통보 및 기록·관리 등의 의무와 관련한 다수 위규사항이 발생되었는바,

* 부서간 소관 업무 이관, 여신부서의 수신업무 처리 등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「직제분장규정」 등 관련 내규상 해당 업무처리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

** 표준규정 「감사규정」 중 감사요령에 의하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 정당이행 및 제서류 징구 여부, 명의변경, 통장분실 등 제사고 신고 등의 적정 처리 여부, 예금의 해지 및 지급 절차 준수, 여부금융거래정보제공 업무 정당처리 여부 등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

있으나, 형식적 감사에 그치고 있음

앞으로 「금융실명법」상 실명확인, 거래정보등 제공사실 통보 및 기록·관리 등과 관련된 위규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규정·매뉴얼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체계를 개선하고, 「금융실명법」 위반 여부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방안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및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